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정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326 발의연월일: 2020. 12. 10.

발 의 자:조정식・이규민・김철민

김윤덕 • 민홍철 • 박완주

이형석 · 김성주 · 박홍근

송갑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할 때 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허가를 받았을 때보다 낮아지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등 최초에 허가를 받은 이후 사정변경이 생긴다 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.

뿐만 아니라,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 정보사업자에 대한 정기적 점검은 실시하지 않고, 신고·민원이 접수 된 경우에만 조사를 하고 있는 등 위치정보사업 허가 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위치정보사업자, 사물위치정보위치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 등으로부터 위치정보시스

템 변경 시 해당 시스템의 기술적 수준 하향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,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며, 그 밖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와 함께 해당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36조제3항 및 제4항, 제36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7항 중 "변경(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 적 수준이 허가받은 때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한정한다)하려는"을 "변 경하려는"으로 한다.

제5조의2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위치정보시스템

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위치정보시스템

제3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 이 경우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관계 물품·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실태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

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, 관계 물품·서류 및 시설·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.

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의2(시정조치 등)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,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표의 방법·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한다. 이 경우 공개의 방법·기준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8조제2항제3호 중 "제36조제1항 및 제2항"을 "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"로 한다.

제38조의3 중 "제36조를"을 "제36조제1항 · 제2항을"로 한다.

제4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의 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15. 제36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물품·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
- 16. 제36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・방해 또는

기피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5조(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제5조(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)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) ① ~ ⑥ (생 략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의 허가를 받은 자(이하 "개인 위치정보사업자"라 한다)가 허 가를 받은 사항 중 위치정보시 스템을 변경(변경으로 인하여 -----변경하려는----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 술적 수준이 허가받은 때보다 <u>낮아지는 경</u>우로 한정한다)하 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 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 고.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 ⑧ (생 략) ⑧ (현행과 같음) 제5조의2(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 제5조의2(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 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 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 업의 신고) ①·② (생 략) 업의 신고) ① • ② (현행과 같 음)

3	제1호	항에	따리	- 위	치정	보사	.업
의	신고	를	한 지	}(o)	하 "	사물	위
刻っ	정보시	나업/	아"라	한1	다)는	: 신	卫
한	사항	중	다음	- 각	호의	니 어	느
하니	구에	해딩) 하는	: 사	·항을	- 변	경
하급	부는	경우	그 대	통령	령으	.로	정
하는	二 一 日	에	따라	방	송통	신위	원
회이	네 변	경신	고를	하여	여야	한다	} .

- 1. 2. (생략)
- 3. 위치정보시스템(변경으로 인 하여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 다 낮아지는 경우로 한정한 다)
- ④·⑤ (생 략)

제9조(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 조 고) ①·② (생 략)

- ③ 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 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 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 여야 한다.
- 1. 2. (생략)
- 3. 위치정보시스템(변경으로 인

③	
1. • 2. (현행과 같음)	
3. 위치정보시스템	
④·⑤ (현행과 같음)	
제9조(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	신
고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	
③	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위치정보시스템

하여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한 정한다)

④·⑤ (생 략)
제36조(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
①·② (생 략)
<<u><신 설></u>

<신 설>

- ④·⑤ (생 략)④·⑤ (현행과 같음)제36조(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)제36조(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)
 - ①·② (현행과 같음)
 -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의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관계 물품・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실태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, 관계 물품・서류및 시설・장비 등을 검사하게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.

<신 설>

제38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제38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(생 략)

②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 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| 제52조에 따른 한국인

제	363	조 으	120	[시	정:	조	۲]	등) (1	방	<u>송</u>
	<u>통</u>	신우] 운	회	는	Ó]	법.	을	위	반	<u>한</u>
	<u> 자</u>	게 거]	해	당	위	반	행.	위의	의	중	지
	<u>나</u>	시	정-	을	위	하	ᅿ	필	요	한	시	정
	<u>조</u>	치틑	1	명절	할 .	<u>수</u>	있	고,	入	기정	조	치
	의	명	령.	을	받	은	지	-에	게	시	정	조
	<u>치</u>	의	명	령	슬	받-	<u> </u>	사	실.	을	공	丑
	<u>하</u> .	도톡	1	할	수	있	다	. c)]	경우	<u> </u>	공
	丑9	의	방	법	• フ]준	<u>.</u> [Į	절.	차	등	에
	<u>관</u>	<u>하</u> 여	1	필.	요국	한	사	항.	<u>슨</u>	대	통	궝
	<u>령</u>	<u> </u>	1 7	정호	한다	<u>}.</u>						
	_0 -		_	0 1	<u> </u>	<u>' ·</u>						

-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사 실을 공개한다. 이 경우 공개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.
- (현행과 같음)

②	-
	-
	-
	-
	_
	_

터넷진흥원 또는 「방송통신발 전 기본법」 제34조에 따른 한 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- 1. 2. (생략)
- 3. <u>제36조제1항 및 제2항</u>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(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)
- 제38조의3(준용 규정) 개인위치정 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·제 3항, 제17조, 제28조제1항, 제34 조, 제35조 및 <u>제36조를</u> 준용한 다.
- 제43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~ 5. (생 략) <신 설>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-
제38조의3(준용 규정)
제36조제1항·
제2항을
제43조(과태료) ①
<u>.</u>
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방송
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
조치의 명령 또는 공표명령
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(2)

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14.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③ ~ ⑧ (생 략)

-----.

- 1. ~ 14. (현행과 같음)
- 15. 제36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물품·서류 등을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
- 16. 제36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・방해 또는 기피한 자
- ③ ~ ⑧ (현행과 같음)